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01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안상훈·박준태·김소희

박덕흠 • 서천호 • 백종헌

이달희 • 서명옥 • 최보유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이나,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나 됨.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 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 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요양기관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정한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

의 실시간 연계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실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		
	스템 구축·운영 등) ① 요양		
	기관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의 방지를 위		
	하여 정한 대상질환에 따른 인		
	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		
	양급여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		
	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정		
	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u>· 운영하여야 한다.</u>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62조		
	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요양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 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 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 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연계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 ·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실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

∥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
고) ①			

<u>심사평가원</u>
②・③ (현행과 같음)